

제·개정 및 폐지 예고문

회원종목단체규정(회규)을 제·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1. 21.

대한체육회장

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회원종목단체규정(회규) 일부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규정 내 용어 정비 및 규정의 명확화
-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 관련 공시주기 및 항목 구체화

2. 주요내용

- 총회에서 회장 선출하는 경우, 행정절차 간소화
 - 회원종목단체 총회에서 회장 선출하는 경우 체육회 심사 및 심사결과 공고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간소화
- 임원의 종료시점 명확화
 - 임원 임기 종료시점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, 정관 준용하여 명시
-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 구체화
 - 경영공시 공시주기(정기, 수시 등) 및 공시항목을 명확히 하여 회원종목단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
- 기타 자구 수정(선거관리위원회→선거운영위원회 등), 용어 정비 등

3. 의견제출

- 이 회원종목단체규정(회규)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